

한국양서·파충류학회 규정

[시행 2020.6.20.][한국양서·파충류학회 규정, 2020.6.20., 일부개정]

제1조(명칭)

- ① 본 회의 명칭은 한국양서·파충류학회 (이하 “학회”라 칭함)라 하고, 영문은 The Korean Society of Herpetologists 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- ① 본 학회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양서·파충류에 관한 연구 및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, 이를 통하여 한국 내 양서·파충류의 효율적인 보전에 관한 대책 등을 제시하여, 한국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.

제3조(직제)

- ① 본 학회의 직제는 회장 1인, 총무이사 1인, 학술위원장 1인, 감사 1인 및 이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② 총무이사는 총무간사1인, 회계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학술위원장은 편집간사 1인, 정보간사 1인, 홍보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요청하여 간사 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(사무국 설치/운영)

- ① 학회 사무국은 회장의 근무지를 원칙으로 하되, 그 외 지역에 설치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- ② 사무국은 회장 1인, 총무이사 1인, 총무간사 1인, 회계간사 1인으로 운영하며, 학회 운영 및 위원회를 지원한다.

제5조(회원)

- ① 회원구분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, 그 기준은 각 호와 같다.
 1. 개인회원 : 학회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양서·파충류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
 2. 단체회원 : 학회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대학, 기업, 연구소 등에 준하는 단체
- ② 제1항에서 정한 개인회원의 회원등급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, 정회원은 최근 2년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로 한다.
- ③ 정회원은 본 규정 제6조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제6조(정회원 권리와 의무)

- ① 정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.
 1. 학회에서 배포하는 학회지 및 발간자료를 받는다.
 2.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.
 3. 정기학술발표대회에 참여하여 연구발표, 강연을 할 수 있다.
 4. 정기총회에 참여하여 의견개진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- ② 정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.
 1. 학회에서 정한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.
 2. 정기총회 및 이사회 의사결사항을 이행한다.
 3.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한다.

제7조(입회 및 탈퇴)

- ①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여 입회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, 학회 사무국에 탈퇴원을 제출하여 탈퇴 할 수 있다.
- ③ 회원은 학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거나 심각한 위배행위를 한 경우, 이사회 의사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다.

제8조(임원 선출)

- ① 임원은 회장 1인, 감사 1인, 이사로 한하고, 이사에 선임된 자가 학술위원장(1인)과 총무이사(1인) 직을 수행한다.
-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③ 회장은 양서·과총류 분야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 후, 정회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이어야 한다.
- ④ 회장은 이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, 이사회 의사결을 거쳐 임명한다.
- ⑤ 회장의 임기는 회계연도 시작일과 동일하게 시작한다.

제9조(이사회 구성 및 운영)

- ①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“이사회”를 두고 회장 1인, 감사 1인, 이사로 구성한다.

- ② 이사회는 업무의 집행, 사업계획의 운영, 예산, 결산서 작성,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, 기타 주요사항에 대해 의결한다.
-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,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이사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회의의 종류와 소집)

- ① 학회의 모임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학술발표대회와 병행하여 실시한다.
- ③ 임시총회는 회장, 이사 3인 이상 또는 5인 이상 정회원의 발의가 있을 때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11조(의결)

- ① 학회 총회에서 임원 선출, 해임, 예·결산에 관한 사항,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.
- ② 학회의 의결은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,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회계보고)

-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감사는 총무이사와 협의하여 정기총회에서 당 회계연도의 회계 사항을 전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회비)

- ① 학회의 회비는 연회비와 찬조비로 한다.
- ② 연회비는 회원 구분에 따라 학생(초·중·고생 및 대학생) 3만원, 일반인(석·박사생 및 성인) 5만원, 이사 10만원으로 하며, 단체회원은 20만원으로 한다.

제14조(학술활동)

- ①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, 편집위원회는 학술위원장 1인, 편집간사 1인, 정보간사 1인, 홍보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.
- ② 학회는 양서·파충류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학술위원장이 주관하여 학술발표대회를 연 1회 실시한다.

- ③ 학술위원장은 한국양서·과충류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을 겸하며, 그 외 대외적인 학술활동을 총괄한다.

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